

학생행사안전관리규정

제정 2016.10.31.
개정 2018.03.01.
개정 2020.04.13
개정 2022.04.25
개정 2023.03.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자치기구 및 대학본부 등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내외 학생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기구”란 본교에서 활동을 승인한 학생단체를 말한다.(총학생회, 대의원회, 기숙사사생회, 방송국, 동아리연합회 등)
2. “대학본부 등”이라 함은 대학본부, 각 행정부서, 각 스쿨(과, 전공)을 말한다.
3. “학생행사”란 대학의 동아리, 학생회, 스쿨, 전공, 대학본부 등이 주관하여 교·내외에서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신입생직무교육, OT, MT, 환영회, 축제, 행사 등)을 하는 모든 집단 활동을 말한다.
4. “인권침해행위”란 학생 집단 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이다.

가. 신체적 가해행위 : 폭력(구타)행위, 음주강요, 기타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나.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 욕설, 인신공격, 신체·외모적 비하 발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하거나, 정신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

다. 성적 가해행위 : 문자·언어적 방법 또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5.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의 생명·신체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안전관리책임자”란 교내·외 학생행사 시 행사승인과 안전점검의 확인, 인권침해행위방지 사전 교육 및 교육실시 여부 등의 점검, 행사결과보고 등의 책임을 가지며, 담당 보직발령 및 지도교수 수락 등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생자치기구, 대학본부, 스쿨(학과 및 전공) 등에서 주관하는 교내외 학생 행사에 적용한다. 단, 학교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 임의적으로 주관하는 행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학생행사안전관리책임자) 본교의 학생행사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부서 주관 행사: 행사주관 부서장
2. 스쿨(과, 전공), 스쿨 학생회 주관 행사: 스쿨원장(학과장)

3. 총학생회, 대의원회, 기숙사 사생회, 방송국, 동아리 연합회 주관행사: 학생담당 부서장
4. 동아리 주관 행사: 동아리 지도교수
5. 기타 그 밖의 학생행사 : 학생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

제5조(행사의 신청 및 승인) ① 교내·외에서 학생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서식의 행사계획서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그 결과를 학생담당 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② 미 승인된 학생행사에 대해서는 사고 시 참여 학생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행사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규수업 결손과 보강에 관한 사항
2. 불필요(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요소에 관한 사항
3. 인솔교수 참여 여부 및 안전관리, 인권침해행위방지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

④ 승인 부서(스쿨)에서는 행사 신청서와 관련서류, 검토서류 등의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제6조(행사의 불허 및 취소) 학생행사안전관리책임자는 학생행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생행사의 개최를 불허할 수 있으며, 허가한 경우라 하더라도 행사 전, 행사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업 및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2. 교육 목적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정당 및 사회단체와 관련된 경우
3.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4. 본교의 교육이념 및 학칙, 기타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7조(안전교육) 교·내외 학생행사 시 안전관리책임자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사전에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부서 및 실무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행사의 취지와 목적
2. 사고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사전교육
3. 인권침해(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행위 방지 교육
4. 그 밖에 음주, 폭행 등 단체활동 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예방교육

제8조(교내행사) ① 교내의 시설에서 학생행사 진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수업 및 교직원의 근무 분위기 조성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2.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학교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 혹은 실무자는 행사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별표 2]의 체크리스트 서식을 활용하여 점검한다.

제9조(교외행사) ① 교외행사 시 안전관리책임자는 행사 전 사전답사 또는 지자체 및 관할 관공서에 문의하고, [별표 3]의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장소) 안전에 관한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 및 지자체 안전점검결과여부)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수송차량 및 운전자 보험가입여부)
3. 화재예방 등에 관한 사항
4. 단체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사항(여행자보험가입여부 등)

② 학생자치기구 주관 학생행사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대표학생으로 하여금 사전답사 및 위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

제10조(사고대처 및 보고) ① 안전관리책임자 및 인솔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수습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며, 관련 부서(스쿨) 및 학생 담당부서에 상황을 통보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수습 후 [별표 4]의 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학생행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 관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관련 위원회에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총장은 학생행사와 관련된 사고의 경중에 따라 학생행사를 주관한 학생자치기구의 운영중지, 폐쇄, 재정지원 중단 등을 결정하기 위한 학생지도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고대책위원회 구성) ① 학생행사안전관리책임자는 학교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시 학생담당 부서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해당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총장의 지시에 따라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고대책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부서 부서장, 관련 센터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2] 교내행사용 안전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교내 학생 행사	체육 대회	사전에 학생 안전을 위해 행사장을 점검하셨습니다가?	
		운동 시작 전 준비운동은 충분히 하였습니다가?	
		체육활동에 맞는 복장 및 신발을 착용하셨습니다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가?	
		구급약 및 구급요원이 현장에 위치하여 있습니까?	
		행사주관 학생대표 연락처를 확인하셨습니다가?	
		유사 시 관련부서 및 행정기관(119 등)에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확인하셨습니다가?	
	축제	사전에 학생 안전을 위해 행사장을 점검하셨습니다가?	
		행사 전 무대안전 시설 등은 점검하셨습니다가?	
		행사 전 안전관리 요원 및 순찰조는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사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가?	
		구급약 및 구급요원이 현장에 위치하여 있습니까?	
		행사주관 학생대표 연락처를 확인하셨습니다가?	
		유사 시 관련부서 및 행정기관(119 등)에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확인하셨습니다가?	
	동아리 활동 및 기타 행사	사전에 학생 안전을 위해 행사장을 점검하셨습니다가?	
		학생 자체 안전관리 요원 및 순찰조는 편성되어 있습니까?	
		활동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가?	
		구급약 및 구급요원이 현장에 위치하여 있습니까?	
행사주관 학생대표 연락처를 확인하셨습니다가?			
유사 시 관련부서 및 행정기관(119 등)에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확인하셨습니다가?			

점검일자: 00년 00월 00일

안전점검자 000 (서명)

[별 표 3] 교외행사용 안전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교통 안전	차량 서류	차량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십니까?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를 확인하십니까?	
	차량 상태 점검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십니까?(앞 타이어 재생활용은 불법)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십니까?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십니까?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를 확인하십니까?	
	운전자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 및 음주여부는 확인하십니까?	
	안전 교육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습니까?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까?	
	약품 비치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은 구비하십니까?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은 파악하십니까?	
	비상 연락망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유사시 학교,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	
숙소 및 시설 점검	사전 조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지자체 안전점검 등을 받은 시설입니까?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도착 후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화재 예방	사전 조사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합니까?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착 후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점검일자: 00년 00월 00일

안전점검자 000 (서명)

[별 표 4] 사고발생 보고서

행 사 명	학년	스쿨(학과)	성명	성별	연령

1. 사안 개요

가. 사건 일시 :

나. 장소 :

다. 사건 내용(6하 원칙)

2. 사안 경과(일자별, 시간대별)

○

3. 참고 사항 (정서행동발달사항, 성적, 성격, 가족관계, 교우관계, 주변환경, 기타)

○

4. 조치 사항

○

보 고 자 : 소속(스쿨, 부서)

성명:

(서명)